

보도시점 2026. 6. 22.(월) 조간
2026. 6. 21.(일) 12:00

배포 2026. 6. 19.(금)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교체로 흡연 위험성 경고 강화

-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 개정(6.22.) -
- 경고그림 신규주제 신장암 도입 및 결과직시형 경고문구로 교체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를 6월 22일(월) 개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 위험을 그림과 문구로 담뱃갑에 표시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의 담배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되어 138개국(2025년 기준)에서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후,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현행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문구가 2026년 12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그림·문구(2026.12.23. ~ 2028.12.22.)를 도입하기 위해 이번 고시 개정이 추진되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24개월마다 경고그림·문구를 고시하고, 고시 시행 시에는 6개월 이상 유예기간 필요

제6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반복노출에 따른 익숙함을 방지하고 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 폐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안을 개발하였으며, 행정예고 및 세계무역기구(WTO) 기술무역

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의견조희(3.30.~5.29.), 금연정책전문위원회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 성인·청소년 약 2,100명 대상 제6기 경고그림·문구 후보안 인식도 조사 실시('26.1~2월)

** WTO 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등 제·개정 시 WTO 사무국을 통해 타 회원국에 통보 의무(의견 수렴기간 60일 이상)

이번에 변경된 건강경고는 **퀄런***의 경우, 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 폐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직관적 표현이 어려운 성기능 장애를 삭제하고 신장암을 새로 도입하였으며 5종의 경고그림을 변경**하였다. 경고문구는 결과 암시형 기존 문구를 결과 직시형 문구***로 변경하여 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경고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 연초를 일정한 폭으로 썬 후 제조기를 이용하여 퀄런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 구강암, 심장질환, 안질환, 말초혈관질환, 간접흡연

*** (제5기) 폐암(주제명)으로 가는 길 → (제6기) 흡연의 끝은 폐암(주제명)

또한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2종은 효과성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모두 변경하였다. 경고문구는 건강경고 주제별 특성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각각 분리*하여 표현함으로써, 그림과 문구의 연계성을 높이고 건강위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 (제5기) (중독·병변)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 → (제6기) (중독)니코틴 중독! / (병변)암 발생 위험!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올해 1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담뱃갑 건강 경고 메시지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과 건강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 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담뱃갑 건강경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고 그림 면적 확대, 담배 기기장치 등 건강경고 적용 대상 확대, 무광고 표준 담뱃갑(플레인 패키징) 도입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담배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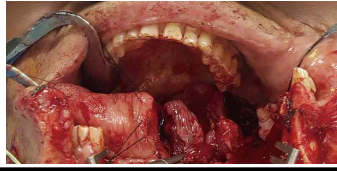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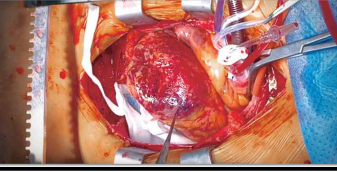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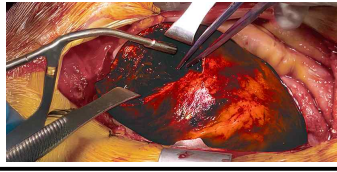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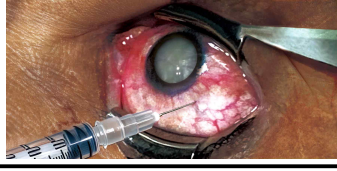
- <붙임> 1. 제6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내용
2.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전부개정고시안
3. 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방법(시행령 별표1의2)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책임자	과 장	전은정 (044-202-2820)
		담당자	사무관	박선명 (044-202-2822)



붙임 1

제6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내용

주제	현행(제5기)	교체안(제6기)
폐암	 <p>폐암으로 가는 길</p>	<p>⇒ (문구 교체)</p>  <p>흡연의 끝은 폐암</p>
후두암	 <p>후두암으로 가는 길</p>	<p>⇒ (문구 교체)</p>  <p>흡연의 끝은 후두암</p>
구강암	 <p>구강암으로 가는 길</p>	<p>⇒ (그림·문구 교체)</p>  <p>흡연의 끝은 구강암</p>
심장질환	 <p>심장마비로 가는 길</p>	<p>⇒ (그림·문구 교체)</p>  <p>흡연의 끝은 심장질환</p>
뇌졸중	 <p>뇌졸중으로 가는 길</p>	<p>⇒ (문구 교체)</p>  <p>흡연의 끝은 뇌졸중</p>
안질환	 <p>실명으로 가는 길</p>	<p>⇒ (그림·문구 교체)</p>  <p>흡연의 끝은 실명</p>

말초혈관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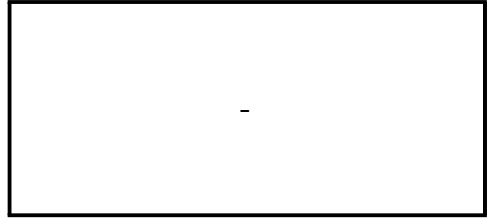
⇒
(그림·
문구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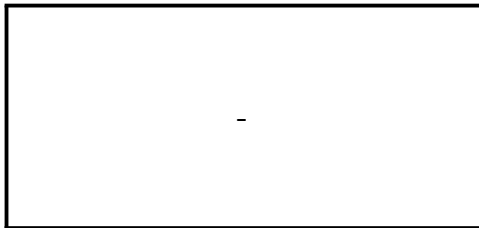
성기능
장애



⇒
(주제
삭제)



신장암



⇒
(신규
주제
도입)



간접흡연



⇒
(그림·
문구
교체)



치아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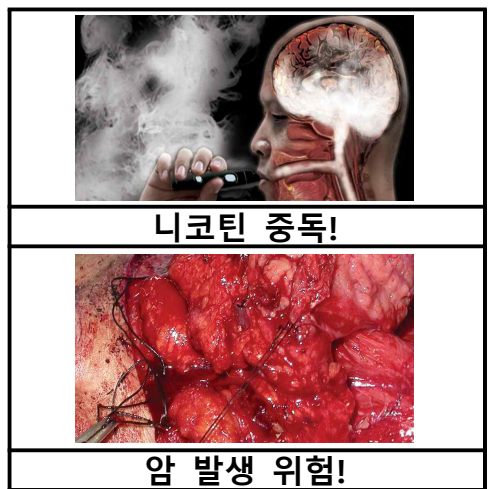
⇒
(문구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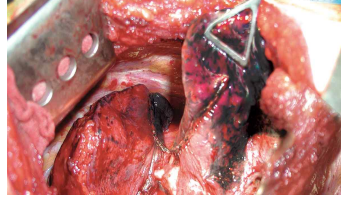
액상형
전자담배



⇒
(그림·
문구
교체)



꺽련형
전자담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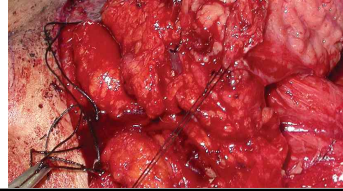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

⇒
(그림·
문구
교체)



니코틴 중독!



암 발생 위험!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전부개정고시안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6조의2에 따라 담배의 담뱃갑포장지 및 전자담배 등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 등) 담배의 담뱃갑포장지에 따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의 경우 : 별표 1
2. 영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의 경우 : 별표 2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담뱃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별표 2] 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별표 1]

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제2조제1항 관련)

구분	경고그림 (상단표기)	경고문구		
		앞면(상단표기)	뒷면	옆면
1. 폐암		흡연의 끝은 폐암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후두암		흡연의 끝은 후두암 금연상담전화 1544-9030		
3. 구강암		흡연의 끝은 구강암 금연상담전화 1544-9030		
4. 심장 질환		흡연의 끝은 심장질환 금연상담전화 1544-9030		
5. 뇌졸중		흡연의 끝은 뇌졸중 금연상담전화 1544-9030		
6. 안질환		흡연의 끝은 실명 금연상담전화 1544-9030		
7. 말초 혈관 질환		흡연의 끝은 말초혈관질환 금연상담전화 1544-9030		
8. 신장암		흡연의 끝은 신장암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구분	경고그림 (상단표기)	경고문구		
		앞면 (상단표기)	뒷면	옆면
9. 간접 흡연		아기를 병들게 하는 길 금연상담전화 1544-9030		
10. 치아 변색		흡연의 끝은 치아변색 금연상담전화 1544-9030		
<p>「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각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을 동일한 비율(앞·뒷면은 별개로 봄)로 적용토록 하여야 하며, 위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을 담뱃갑 포장지에 선명하게 표기하기 위해 제품 사이즈(size), 해상도 등에 맞는 이미지 제공을 전자 파일 등 형태로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p> <p>경고그림등의 표기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의2를 따른다.</p>				

[별표 2]

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제2조제2항 관련)

구분	경고그림 (상단표기)	경고문구		
		앞면 (상단표기)	뒷면	옆면
1.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니코틴 중독!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니코틴 중독!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전자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 발생 위험!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암 발생 위험! 금연상담전화 1544-9030	
2. 전자담배 (꺠련형 및 기타유형)		니코틴 중독!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니코틴 중독!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암 발생 위험!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암 발생 위험! 금연상담전화 1544-9030	
3. 씹는 담배		흡연의 끝은 구강암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흡연의 끝은 구강암 금연상담전화 1544-9030	
4. 물담배		흡연의 끝은 폐암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흡연의 끝은 폐암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물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
5. 머금은 담배		흡연의 끝은 구강암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흡연의 끝은 구강암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머금은 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위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을 담뱃갑 포장지에 선명하게 표기하기 위해 제품 사이즈(size), 해상도 등에 맞는 이미지 제공을 전자파일 등 형태로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
경고그림등의 표기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의2를 따른다.

1. 위치

가. 담배갑포장지의 앞면·뒷면에 경고그림등을 표기하되, 상단에 표기한다.

나. 담배갑포장지의 옆면에 경고문구를 표기하되, 옆면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의 크기로 표기한다.

2. 형태

경고그림등은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표기한다. 다만, 담배 제품의 모양이 원통형으로 되어있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형태의 테두리 안에 표기한다.

3. 글자체

경고그림등에 사용되는 글자는 고딕체로 표기한다.

4. 색상

경고그림등에 사용되는 색상은 그 포장지와 보색 대비로 선명하게 표기한다. 다만, 경고그림의 색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고그림의 색상을 그대로 표기한다.

비 고

1. 위 표의 제2호에 따른 사각형의 테두리는 두께 2 밀리미터의 검정색 선으로 만들어야 한다.

2. 위 표의 제2호에 따른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는 경고그림등 외의 다른 그림, 문구 등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